

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한 모임 규칙(안)

- < 1994. 5. 14. 제 정 >
- < 1995. 1. 21. 1차개정 >
- < 1997. 2. 22. 2차개정 >
- < 1998. 2. 14. 3차개정 >
- < 2000. 3. 11. 4차개정 >

제1조 (명칭) 본 모임의 명칭은 '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한 모임' (약칭, 지보의)이라 한다.

제2조 (목적) 본 모임은 보건의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원들의 친선도모와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 본 모임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.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정책개발
2.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개발
3. 학술대회 개최
4. 기타 본 모임의 목적에 관계되는 사업

제4조 (회원) 본 모임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보건의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사
2. 기타 본 모임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자

제5조 (회원의 의무) 본 모임의 회원은 각종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가입시에 입회비와 연회비, 모임 참가시에 참가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.

제6조 (임원) 본 모임의 임원에는 회장, 학회파견이사, 총무, 부총무, 학술부장, 편집부장, 정보통신부장 각 1인과 부회장과 감사 각 2인을 두며, 각 시·도별지부에 대의원 1인을 두고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1. 회장 :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, 본 모임을 대표한다.
2. 부회장 :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3. 총무 : 총무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회장을 도와 본 모임의 실무를 담당한다.
4. 부총무 : 부총무는 총무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며, 총무를 도와 본 모임의 실무를 담당한다.
5. 학술부장 : 학술부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본 모임의 학술적인 업무를 담당한다.
6. 편집부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회지발간업무를 담당한다.

7. 정보통신부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홈페이지 운영, 관리 및 보건의료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8. 감사 :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, 매년도 회계의 결산내용을 검토하여 총회에서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.

9. 학회관련이사 : 학회관련이사는 회장이 지명하며 (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), 본 모임을 대표하여 각 관련학회의 이사가 되며 학회와의 연락 및 공직의를 대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.

10. 대의원 : 각 대의원은 각 지부의 다수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 하며, 지부를 대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.

제7조 (고문과 자문교수)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본 모임의 학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교수를 둘 수 있다.

제8조 (운영위원) 운영위원은 회장단, 각 지역대의원, 고문 및 회장이 선임한 자로 한다.

제9조 (회의) 본 모임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운영위원회가 있다.

1. 정기총회 :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1회 개최하며 임원선출과 승인, 자문교수 선정에 관한 사항 및 회칙개정 등을 의결한다..

2. 임시총회 :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대의원의 1/3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한다.

3. 운영위원회 :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에서 의결한 세부사항, 위임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결정한다.

제10조 (의결) 중요한 사항은 회원의 1/3이상의 참석에 1/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 (제정) 본 모임의 재정은 입회비, 연회비, 참가비, 기타 기부금으로 충당한다.

제12조 (결산보고)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시에 전년도의 결산내용을 검토한 후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 본 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일반관례에 준한다.

제2조 본 규칙은 총회의 의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.

제3조 입회비는 10만원, 연회비는 12만원, 참가비는 실비에 준한다.